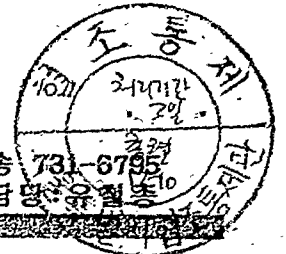


# 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 02 )731-6391-4/ 전송 731-679510  
 처리부서:주택개량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 별관2층)담당:유철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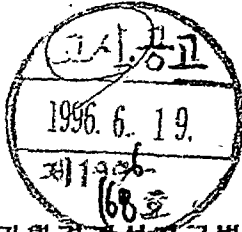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주개 58533 - 1395

시행일자 1996. 6. 19.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: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
주택개량과장	전결	법무담당관 <i>김사필</i> 6.18
개량 2 계장	<i>장</i>	
기안	장 춘 식	협조

제목 : 청량리제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(일부추가)

1. 건설부고시 제1994-197호('94. 6.13)로 지구지정되고 건교부고시 제1995-126호(95. 6.12)로 지구변경지정결정된 등대문구 청량리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제3조4항,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구변경(일부추가)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지구지정 변경 내역

지구명	위 치	면 적 ( m <sup>2</sup> )		비 고
		기 정	변 경	
청량리 제1지구	등대문구 청량리동 822일대	17,566	18,332	지구추가 (증 766m <sup>2</sup> )

- 따로붙임 : 1. 고시안 1부.  
 2. 지구변경 도면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재의뢰

1.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청량리제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



다. 법적근거 :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  
행령 제3조제2항·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
따로붙임 : 1. 고시안 사본 2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: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: 주택관리과장

제목 :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1994-197호('94. 6.13)로 지구지정되고 건교부고시 제1995-126('95. 6.12)로 지구변경지정결정된 청량리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변경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.따로붙임 : 1. 고시안 1부.  
2. 지구변경 도면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(제 4 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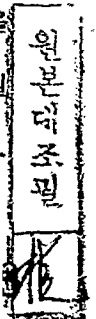
수신 : 동대문구청장

참조 : 주택과장

제목 :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통보

1. 건설부고시 제1994-197호('94. 6.13)로 지구지정되고 건교부고시 제1995-126호(95. 6.12)로 지구변경결정된 청량리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변경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구청·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·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하고 빠른시일내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.따로붙임 : 1. 고시안 1부.  
2. 지구변경 도면 1부. 끝.



# 서울특별시

(제 5 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

제목 :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·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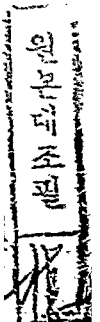
1. 건설부고시 제1994-197호('94. 6.13)로 지구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995-126호('95. 6.13)로 지구변경지정결정된 청량리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입시조치법 제3조와 등법시행령 제3조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변경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기 통보합니다.

.파로붙임 : 1.고시안 1부.

2.지구변경 도면 1부. 끝.

## 주택개량과장

.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.



1996. 6. 10	1996. 6. 10	1996. 6. 10
담당자	법제심사제장	법무담당관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 - 호

청량리제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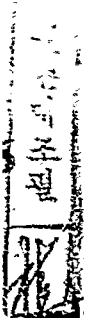
1. 건설부고시 제1994-197호('94. 6.13)로 지구지정되고,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-126호('95. 6.12)로 지구변경지정된 청량리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지정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동대문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6년 6월 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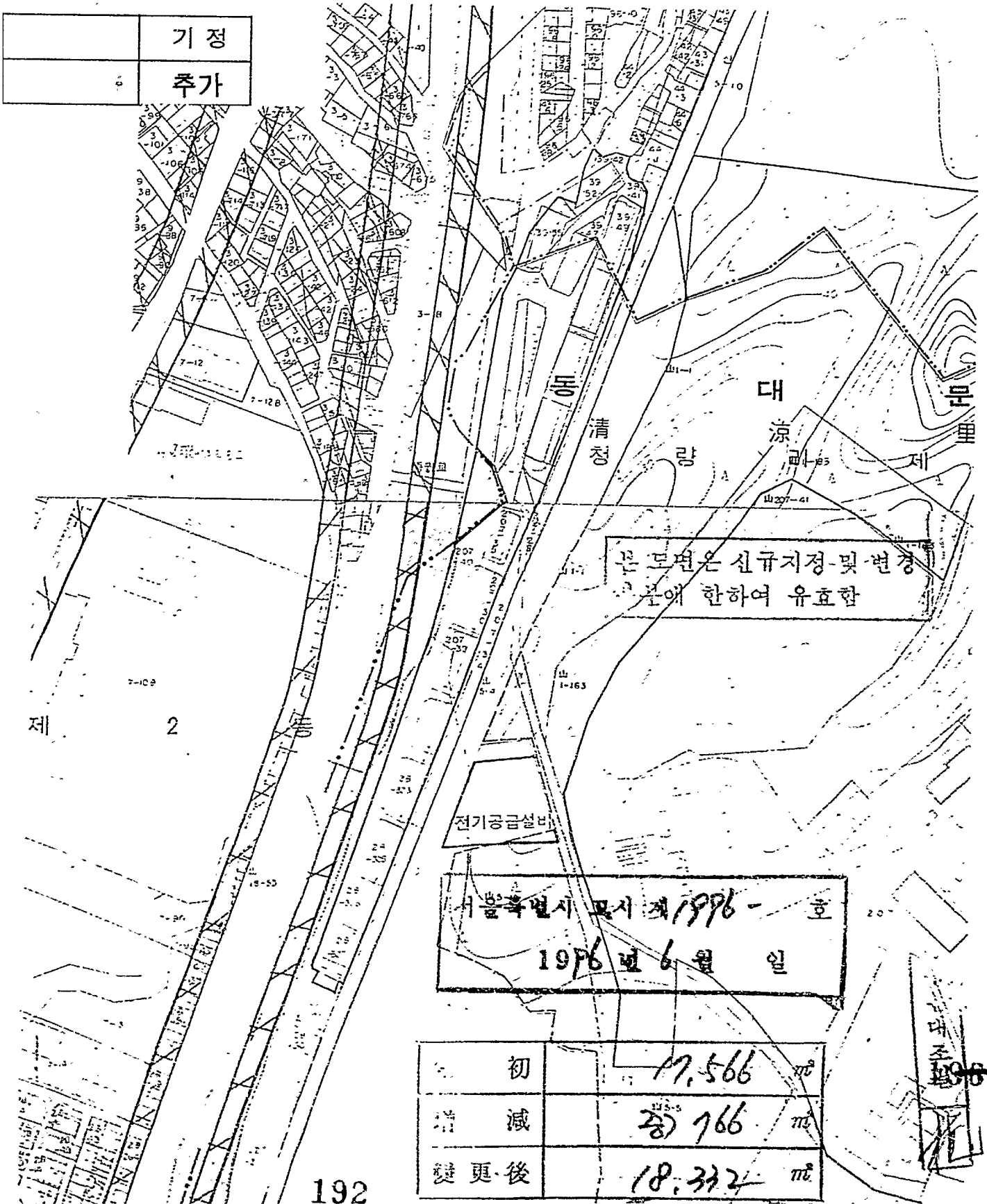
지구명	위 치	면 적 (㎡)		비 고
		기 정	변 경	
청량리제1주거환경개선지구	동대문구 청량리동 822번지 일대	<del>16,959</del> 17,566	<del>16,873.3</del> 18,332	지구추가지정 (증 85.7㎡) 766㎡



# 청량리제1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변경 결정도

( 축척 : 1 / 3,000 )

	기정
9	추가



본 도면은 신규지정 및 변경  
등에 한하여 유효함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996 - 호  
1996년 6월 일

初	17,566	m <sup>2</sup>
증	166	m <sup>2</sup>
變更後	18,332	m <sup>2</sup>